



2018년 1월 1일 의원급 65세이상 본인부담 변경

의원급 65세이상 본인부담 변경

- 적용일자 : 2018년 1월 1일
- 적용대상 : 의원급(한의원포함) 의료기관의
건강보험환자중 65세 이상
- 적용내용 :
의원 -의약분업 지역(한의원제외)

변경전 :

총금액 15,000이하	=> 1,500원
총금액 15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

변경후 :

총금액 15,000이하	=> 1,500원
총금액 15,000초과 ~ 20,000이하	=> 총금액의 10%
총금액 20,000초과 ~ 25,000이하	=> 총금액의 20%
총금액 25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



의원급 65세이상 본인부담 변경

- 적용내용 :

의원-의약분업 예외지역(한의원포함)

변경전 :

총금액 15,000이하	=> 1,500원
총금액 15,000초과 ~ 20,000이하	=> 2,100원
총금액 20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

변경후 :

총금액 15,000이하	=> 1,500원
총금액 15,000초과 ~ 20,000이하	=> 총금액의 10%
총금액 20,000초과 ~ 25,000이하	=> 원내투약있음 : 총금액의 10%
	원내투약없음 : 총금액의 20%
총금액 25,000초과 ~ 30,000이하	=> 원내투약있음 : 총금액의 20%
	원내투약없음 : 총금액의 30%
총금액 30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



의원급 65세이상 본인부담 변경

- 적용내용 :

약국

변경전 :

총금액 10,000이하	=> 1,200원
총금액 10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

변경후 :

총금액 10,000이하	=> 1,000원
총금액 10,000초과 ~ 12,000이하	=> 총금액의 20%
총금액 12,000초과	=> 총금액의 30%